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시 방문조사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96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현황	3
가.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및 방문조사 관련 통계	3
나. 수용자의 검찰 출석조사에 대한 관련기관 권고 사항	5
3. 검토의견	7
가. 수사기관의 수용자 방문조사 및 영상녹화 의무화	7
나.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출석요구서 발송 의무화	12
다. 기타 검토사항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¹⁾에 따른 수용자 조사시 ①교정시설 방문 조사나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②방문조사가 불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출석 요구서를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③수용자 조사시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00조의2 신설).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0조의2(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범위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생략)	第200條의3(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 제200조의2와 같음)
第200條의3(緊急逮捕) (생략)	第200條의4(緊急逮捕) (현행 제200조의3과 같음)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생략)	第200條의5(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현행 제200조의4와 같음)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생략)	제200조의6(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현행 제200조의5와 같음)
第200條의6(準用規定) (생략)	第200條의7(準用規定) (현행 제200조의6과 같음)

2.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현황

가.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및 방문조사 관련 통계

구속피의자·구속피고인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 출석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용자가 재판 등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건수는 205,723건, 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43,481건으로 집계됨. 반면, 검찰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한 건수는 232건(검사 직접방문은 41건)으로, 경찰의 방문조사 58,881건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남.

[표 2] 최근 5년간 수용자의 법원·검찰청 출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77,003	244,324	215,671	216,602	249,204
법원	207,072	195,289	180,967	181,911	205,723
검찰청	69,931	49,035	34,704	34,691	43,481

* 자료: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p.120

[표 3]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방문조사(공무상 접견 등)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58,993	52,816	45,138	53,278	66,836
경찰 방문조사	53,953	48,076	40,537	46,934	58,881
검찰 방문조사 (검사 직접방문)	35 (9)	46 (26)	98 (22)	285 (30)	232 (41)
보호관찰관 등 조사	5,005	4,694	4,503	6,059	7,723

* 자료: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p.120

또한, 최근 5년 간(2019~2023년) 입소한 수용자 중 검찰청에 10회 이상 출석한 수용자는 1,27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4] 최근 5년 입소한 수용자 중 검찰청 10회 이상 출석 현황

(단위: 명)

출석횟수	합계	10회 이상	2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이상
인원	1,277	1,080	173	19	5

* 자료: 법무부

나. 수용자의 검찰 출석조사에 대한 관련기관 권고 사항

2020년 4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석조사할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²⁾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의 문제점으로,

① 수용자가 참고인의 지위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검사실 출석여부는 참고인인 수용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수용자의 특수한 지위와 검사의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출석이 사실상 강제되어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②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정」 제2조³⁾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2) 법무부 보도자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6차 권고 발표 - 」, 2020. 4. 13.

3) 「수형자 등 호송규정」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서 검찰청까지의 호송은 검찰청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교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검사실까지 계호·호송함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며,

③ 이 외에도 수용자의 검찰청 구치감에서의 장시간 대기 및 불필요한 출석조사 남용에 따른 수용자 인권 침해, 검사실에서의 수용자 도주 사례 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⁴⁾도 2023년 12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실태 점검을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 편의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출정특례(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와 관련하여,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무 가중, 수용자들을 3~5명씩 연결하여 수갑을 채우는 연승(聯繩)과정에서의 부상 위험 및 인간적 모멸감, 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이를 토대로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①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 ② 소환일 전날 갑자기 통보되는 일을 지양하고 변호인 입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 ③ 경미한 범죄수사 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처우 개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출정특례 폐지 등 권고-」, 2023. 12. 18.

에는 원격화상 조사를 실시할 것, ④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검찰청 호송, 계호, 조사 참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⁵⁾

3. 검토의견

가. 수사기관의 수용자 방문조사 및 영상녹화 의무화

개정안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시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검찰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해온 관행을 근절하여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수용자 조사시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또한, 수용자의 검찰 출석조사 관행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입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첫째, 방문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찰과 달리 검찰의 경우 수용자 출석 조사 관행이 자리잡게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인력 규모 및 교정시설

5) 다만, 검찰총장은 2024년 3월 8일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①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 ④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검찰청 호송, 계호, 조사 참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수용인 검찰 출정 특례 폐지 등 수용환경 개선 권고 법무부·검찰청 일부 불수용, 인권위 유감 표명」, 2024. 7. 2.)

의 입지 등 현실적 제약요건이 감안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찰의 수사인력은 검사 약 2,300명⁶⁾ 및 검찰수사관 약 6,000명 규모로 경찰 수사인력 규모(약 35,000명)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며, 수사업무 뿐만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또한 교정시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주로 격오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제한된 수사인력 조건 하에 수용자 방문조사를 의무화할 경우 조사 시간과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의무화 입법은 수용자의 인권 및 방어권 강화 등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구속 기간⁷⁾ 내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역시 적용 대상인바, 인력 규모와 지역별 지청이 없는 공수처 조직구조를 감안할 때 더욱 수사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둘째,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 신분인지, 또는 ‘참

6) 2023년말 기준 검사 정원 2,292명

7)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고인' 신분인지에 따라 방문조사 원칙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수용자가 구속·수감된 사건과 별개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⁸⁾에서 수용자를 일반참고인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참고인'인 수용자를 강제로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교정시설 방문조사 의무화 개정안은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임.

반면, 수용자가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용자의 수사기관 출석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의 논의가 있음.⁹⁾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¹⁰⁾ '피의

8) [대법원 1996. 8. 11.자 1996모46결정]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은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별개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하여 재향고인을 구속한 것이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이 미치는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9) 출석의무를 긍정하는 견해는, 수사절차상 구속에는 피의자신문 등 범죄수사의 목적이 포함되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69조의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 개념이 포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은 수사를 위한 구속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강제하는 '구인'의 효력까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하는 출석협조의무(조사수인의무)가 인정된다는 입장임.(김승주,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과 구속영장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98호(2014. 6), p.462-465)

출석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200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적 수사이므로, 체포·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절차를 강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목적으로 구속피의자를 조사실에 강제 인치하는 처분은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에 반한다는 입장임.(김승주, 앞의 논문, p.469)

10)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예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

자' 신분인 수용자의 수사기관 출석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용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학계의 입장과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것을 권고하여, 수용자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출석조사 허용여부를 구분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시행가능성과 관련하여 교정시설 내 접견실·원격화상 조사실·영상녹화실 등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은 교정시설 방문조사시 각 교정시설의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¹¹⁾하게 되는데, 검찰 등의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의무화될 경우 공무상 접견실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에도 수용자에 대한 공무상 접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바,¹²⁾ 먼저 교정시설 내 공무상 접견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검찰·

서 수사기관이 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11) 2024년 현재 전국 55개 교정시설에 204개의 공무상 접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12) 주요 교정시설은 1개월 단위로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기에 예약이 모두 완료되어 수사관이 원하는 조사시기에 공무상 접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공수처 뿐만아니라 경찰의 수사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방문조사가 아닐 경우 원격화상조사를 규정하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원격화상조사실은 각 교정기관별로 1개씩 설치된 수준으로, 개정안 시행시 원격화상조사실도 이용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짐.

한편, 법 제244조의2제1항¹³⁾이 영상녹화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개정안 제200조의2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영상녹화조사실은 18개 기관에 25개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 시행시 상당수의 교정시설은 영상녹화가 불가하여 수용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개정안은 목적·취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정시설 내 접견실·원격화상조사실·영상녹화실이 현실적으로 구비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등 교정시설 관리주체와 심도있게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대로 입법할 경우 부칙 시행일 조정을 통해 시설 확충 등 법 집행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1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방문조사 원칙의 예외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200조의2제1항 단서는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방문조사 의무의 예외 요건으로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질심문 ‘등’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방문조사 원칙의 예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출석조사 관련 수용자의 권익 및 처우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조사 원칙의 예외 요건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출석요구서 발송 의무화

개정안 제200조의2제2항은 수사기관이 예외적 사유로 수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죄명·출석사유·출석장소·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요구서 기재 내용을 벗어나서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출석 사유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 인권보호 및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동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요구서에

죄명·사유·장소 등을 기재하는 등 서식을 개선하였고,¹⁴⁾ 현재에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출석요구서에는 수용자 명의로 된¹⁵⁾ 죄명,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의사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검토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¹⁶⁾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동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조의 ‘수용자’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이 포함됨.¹⁷⁾ 그런데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유치장과 조사실이 동일한 경찰관서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유치인 조사는 반드시 유치장에서만 시행하거나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14)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 2020. 9. 18.

15) 다만, 수용자 신분으로 직접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사가 KICS를 통해 해당 교정기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교정기관 직원이 수용자에게 이를 출력하여 전달해주고 있음.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수용자’ 범위에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제외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하게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시 교정기관 방문조사 및 원격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3,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두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48